



보도	배포시	배포	2024.11.6.(수)		6.(수)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	책임자	국 장	이길성	(02-3145-5701)
		담당자	팀 장	박성주	(02-3145-5680)

금융감독원은 제7기 옴부즈만을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4.11.4. **외부전문가 5명을 제7기** 음부즈만으로 위촉(임기 2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은 **독립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 금융감독원은 **옴부즈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향후 **업무** 수행시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7기 옴부즈만 현황

소비자	은행	중소서민	보험	금융투자
안수현	나상용	구정한	박소정	김정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 한편, 제6기 옴부즈만*은 **금융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현장중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제6기 옴부즈만 위원

소비자	은행	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
최 철	서병호	서지용	김태진	박성원
숙명여대 44FR정제학과교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광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기 중 총 26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하여
 이중 12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심의 사례]

- ① 장기기증 공여자의 보험가입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가입이 제한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기증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
 - 보험회사의 **장기기증 공여자**에 대한 계약인수 지침을 파악하고 부당한 인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23.8월)
- ② 비대면 실명확인용 소액(1원) 계좌이체를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아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접수하여
 -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라는 규제 취지를 고려할 때 실명확인용 소액 이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간주할 실익이 없음을 안내('24.4월)
- ③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공시기준(여신금융협회 규정)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전사의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공시기준 개정**(자기자본 5% 이상 → 자산총액 10% 이상)('24.6월, 여신금융협회)

[붙임1] 제7기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주요 약력 [붙임2] 제6기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주요 심의 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제7기 금융감독원 음부즈만 주요 약력

구분	소속·직위	성명(생년)	주요학력	주요약력
소비자	한국외대 법학전문 대학원장	안수현('69)	· 이화여대 법학 학·석사 · 서울대 법학 박사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 금감원 감독자문위원회 위원 · 금융발전심의위 위원(금융보험) · 공정위 약관심사위원회 위원
은행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나상용('69)	·서울대 법학 학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중소 서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정한('70)	·고려대 독어독문학 학사 ·고려대 경제학 석사 · 美 코넬대 경제학 석·박사	·(現)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소비자연구실)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 서민금융협의회 위원
보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박소정('79)	· 서울대 산업공학 학·석사 ·美 펜실베니아대 보험학 박사	·(現)한국보험학회 이사 ·금융발전심의위 금융산업· 혁신분과 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금융 투자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김정훈('81)	·홍익대학교 경영학 학사 (금융보험전공)	(現한국거래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現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 (現)UN SDGs 협회 대표

붙임2 제6기 금융감독원 음부즈만 주요 심의 사례

1 장기기증 공여자 보험가입 관련 불이익 개선

- □ (건의사항) 장기기증 공여자가 보험 가입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건의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3)은 장기기증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 장기기증 공여자가 보험가입시 유병력자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할중되거나 또는 부담보 설정 등으로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 발생
- □ (옴부즈만 의견) 보험회사의 장기기증 공여자들에 대한 계약인수 지침을 파악하여 부당한 인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 장기 기증자의 보험가입시 불이익 개선을 위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인수기준 제도 개선 협의 및 지도 완료('23.8)

2 예탁금이용료 지급만 있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통지의무 완화

- □ (건의사항)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월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등을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금투업규정 §4.37①)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예탁금이용료 지급내역만 있는 경우 투자자보호의 실익이 높지 않아 통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 (옴부즈만 의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없이 예탁금이용료 지급내역만 존재하는 경우 통지를 생략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 예탁금이용료 지급내역만 존재하는 경우 매매내역 통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신청인에게 안내* 완료('24.4)
 - *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신청인에게 금융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신청토록 안내

DSR 산정시 추정소득 인정비율 상향

3

- □ (건의사항) 차주의 DSR 산출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추정소득*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 인정비율(80%) 및 인정금액(5천만원) 상향 건의
 - * 신용정보회사가 개발한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으로, 연소득은 추정소득의 80%까지 인정(단, 은행을 통해 제출된 1년 이내 증빙자료 활용시 최대 90%)
 - 신용카드사 등 **여전사**의 소득 인정비율 및 인정금액이 은행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대출금액이 낮아지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 야기
 - 특히 대환대출시 **금융업권 간 동일한 여신취급기준**을 적용해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유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가능
- □ (옴부즈만 의견)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완화 목적으로 하는 대환 대출 플랫폼 구축 취지를 고려해 추정소득의 인정비율 상향 필요
- ☑ 대환대출 플랫폼 내 취급대출에 한하여 대환시 DSR 관련 추정
 소득 인정비율 상향(최대 90%→ 100%) 완료('23.6. 비조치의견서)

비대면 실명확인용 소액이체시 재산상 이익제공의 예외 허용

- □ (건의사항)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 등에게 제공한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기록 유지 필요(금융투자업규정 §4-18)
 - 신청인은 비대면 실명확인용 소액(1원) 계좌이체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아 기록관리 중이나, 이를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
- □ (옴부즈만 의견)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라는 규제 취지 고려시 실명 확인용 소액이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할 실익이 없음
- ☑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기록 유지에 대한 법규 오해가 없도록 신청인에게 안내 완료('24.4)

5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공시기준 완화

- □ (건의사항) 비상장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5% 이상 타법인 주식 및 출자중권 취득·처분 결정 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공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3②4호,「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타법인 지분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에도 동 수시공시로 투자·회수내역이 공개되는 등 영업상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수시공시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
 - *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회사만을 의미하며 카드·할부·리스업 등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
- □ (옴부즈만 의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된 업무가 타법인에 대한 투자인 점을 고려하여 여신금융협회와 공시기준 완화 방안 협의 필요
- ✓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전사의 경우 자산총액의 10% 이상 취득·처분시 수시공시하도록 기준 개정('24.6)

6 시 신용카드 결제취소시 카드사별 이용실적 차감방식 안내 강화

- □ (건의사항) 신용카드사별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을 통일 하거나 관련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필요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통상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며,
 결제취소시 취소분 차감방식*이 부가서비스 이용가능 여부에 영향
 - * ① 매출발생월 차감방식 : 원매출이 실제 승인된 월의 실적에서 차감
 - ② 취소접수월 차감방식 : 취소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월의 실적에서 차감
 - **신용카드사**별로 결제취소분에 대한 **이용실적 차감방식**이 **달라**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
- □ (옴부즈만 의견) 소비자가 카드결제 취소에 따른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 발급·이용 과정에서 카드사의 안내 강화 필요
- ☑ 신용카드 결제취소에 따른 이용실적 차감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카드사 지도 예정**('24.12월중)